

# 연구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22. 03. 22  
개정 2020. 09. 28  
개정 2018. 01. 23  
개정 2017. 06. 27  
개정 2017. 05. 25  
개정 2016. 01. 19  
개정 2014. 05. 08  
제정 2009. 11. 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시행세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연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 ① 연구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학술이사 2인이 당연직 총괄연구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며, 총괄연구분과위원장은 연구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연구분과를 두며, 연구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1. 핵주기정책·규제 및 비확산
2. 사용후핵연료 처분전관리
3. 고준위폐기물처분
4. 중저준위폐기물관리
5. 제염해체
6. 방사선환경 및 안전
7. 방사화학

③ 연구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 분과별 위원(5인 이내) 및 간사(2인 이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포상 추천) 연구분과위원회는 학술발표회에 발표된 논문 중 분과별 좌장 또는 심사위원을 통해 추천된 우수한 논문을 연구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하여 본 학회에 포상을 추천한다.

제4조(학술발표회 등의 개최 및 비용 부담 등) ① 연구분과위원회는 국내·국제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분과위원회는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등록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등록비 등 금전의 수입, 지출은 본 학회명의로 은행계좌를 통하여

시행한다.

③ 본 학회는 연구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로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분과위원회는 학술발표회 등의 종료 후, 제행사비용(학술발표회 등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정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정산 결과 잔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학회가 흡수한다.

⑤ 연구분과위원회에 대한 학회 이외의 외부 단체 등의 기부금 등의 관리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다른 학술행사 등의 후원) ① 본 학회 외 외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국내외 분야별 (Topical) 학술행사에서 본 학회의 후원을 요청할 경우, 회장은 해당 연구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후원요청 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 회장이 해당 후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후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연구분과명 변경)

####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연구분과 신설)

####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연구분과명 변경)

####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연구분과명 변경)

####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연구분과위원회로 명칭통일 등)

####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